

01 협회 발전방안 제안 내용안내

지난 6월 5일(금) 충북 보은군 속리산유스타운에서 개최 되있었던 전국대의원(임원·지회장·대의원) Work-Shop의 “협회 발전방안 제안” 발표 내용을 회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한전배전 감리제도의 개선

■ 제안내용

- “0일간”의 개념의 주관적인 일방통행식의 감리제도는 시급이 개선이 요구됨
 - 현실의 예) 50일간의 감리건이 발주처의 주관적인 중지·재착 공동의 반복으로 3년씩 지속되며, 감리용역비는 일체의 증액이 없는 것이 현실임

□ 협회의견

- 배전설비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잦은 민원 등으로 인해 당초 공사기간보다 지연되는 것이 다반이며, 그에 따른 감리 대가의 추가지급이 없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협회에서는 감리업자 이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감리대가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시켰으며, (운영요령고시 제15조)
- 특히, 발주자인 한전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원의 초과 근무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공사 완료후에 정산하도록 신설하였음(운영요령고시 제26조)
- 다만,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추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하여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임

2.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고시내용 개정건

■ 제안내용

- 2006. 6. 24 이후부터는 기술사를 제외하고는 경력이 많더라도 특급이 될 수 없는데, 전력기술관리법은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음
 - 시급한 개정이 필요함

□ 협회의견

- 학·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전기, 건설, 소방, 통신 등 각 개별법령에서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박사, 석사 등 일정한 경력을 충족할 경우, 종전 법령에서는 “특급”으로 인정해 왔으나,
- 대통령 직속인 “국가인적자원·기술개발위원회”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우대 및 특급기술자의 과잉배출을 억제 하기 위해 지난 '06년도부터 모든 관련법령을 동시에 개정하여 기술사가 아니면 “특급”이 될 수 없도록 하였음
- 따라서, 동 사안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협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

3. 중앙회 및 지회 Homepage 활성화 방안

■ 제안내용

- 회원게시판 → 질문과 답변, 건의란 등으로 구분하고 답변에 대하여 전문성 제고 - 중앙회 전담자 지정 및 지회는

사무국장으로 하되 우리 회원들 중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

- 지회 Homepage 관리권한을 지회로 이양
-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한을 지회로 이양함이 바람직하며, 그 결과 우수족순의 기타 카페들이 자연스레 정리될 것임

□ 협회의견

- 2008년 11월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통하여 협회 홈페이지 및 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기능을 조정하여 현재 게시판 이외 “질문과 답변”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질문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즉시 답변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지회 홈페이지의 지회관리 권한이양에 대하여는 기존의 메뉴내에서 “지회장 인사말”, “지회조직 및 임원현황”, “지회 연혁”, “오시는 길” 등을 지회에서 직접 편집·변경할 수 있도록 운용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지회 사무국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음
- 또한 협회 홈페이지 개편 시 소그룹커뮤니티(카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3개정도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카페개설 및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4. 우리협회 명칭 변경을 통한 가시적 위상제고

■ 제안내용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를 “한국전기협회” 로!
- 전력기술관리법상 및 유관관련법상의 “전력”을 “전기”로 변경이 필요함
- 전력보다 전기가 광의의 표현이라 생각함

□ 협회의견

- 법령과 협회 명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정 추진 전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협회에서는 최초 법(안) 작성당시 법령을 “전기기술관리법”으로 협회명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명명하기로 하고 정부와 법(안) 작성 방향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고 법(안)을 작성하여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협회명칭도 “전력기술인협회”로 되었음
- 전력기술관리법 제정·공포 이후 협회 내에서 간헐적으로 협회명칭 변경의견이 있어 왔으며, 제4기 이사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행대로 사용기로 한 사항임
- 그러나 협회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협회에서 결정코자 한다면 먼저 정부와 협의하여야 할 사안이며, 제안자께서 제안한 명칭은 “대한전기협회”가 있기 때문에 제안명칭으로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5. 중앙회 각분과 위원회, 각지회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 제안내용

- 정기회의 횟수를 최소한 2개월마다 1회(임시회의는 필요시)
- 협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음

□ 협회의견

- 협회 중앙회는 위원회가 11개, 협의회가 4개로 1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 마다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분들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하신대로 “최소한 2개월마다 1회 개최”가

중앙회는 여러가지 여건상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오나, 지회는 지회장이 판단하여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개최하면 되므로 지회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그리고 협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요사항이나 긴급사항 등이 있는 때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개월수와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라도 개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사안은 규정개정 검토 시 면밀하게 해당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음

6. 운영위원 및 대의원 정수 재정립

■ 제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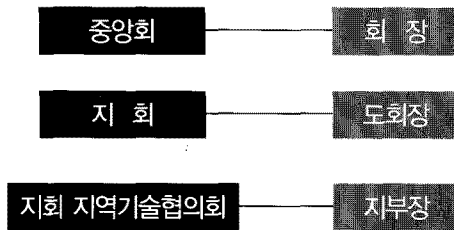
- 지회의 운영위원이 대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도사퇴 시 중간에 충원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 중앙회, 지회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결정을 하는 모순이 있음

□ 협회의견

- 본 제안은 규정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형태로 해당지회 실정에 적합하게 선출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은 많은 회원이 지회 운영과 협회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배경이 있었던 것임
- 협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 기타토의에서 대의원님들께서 언급해주신 정관과 관련 규정 개정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6월 중순 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에 따른 준비를 시작하고자 하며, 본 제안도 관련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음

7. 협회 조직개편(현실적인 피라미드 조직) 및 수장의 직함변경

■ 제안내용



※각 업역별 협의회는 의장으로 통일해 줄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각 지역 기술협의회 핵심적인 임원이 지회의 임원이 되고 지회의 주요임원이 중앙회 임원의 구성주체가 되어야 함
- 중앙회 각 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은 업역별 협의회에서 받지 말고, 21개 지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수렴
- 기대효과
 - 진정한 8만 회원의 구성축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체제의 기반이 될 것이며,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한층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 최소한 주변 협회 조직보다 상대적 어감이 빈약한 느낌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 협회의견

- 본 제안은 지난해부터 지회장의 직함변경을 “도회장”등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협회에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연구·검토를 많이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규정개정 검토 시 관련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수렴과 연구·검토를 할 계획임

8. 감사기능 활성화

■ 제안내용

- 감사기능 활성화로 새롭게 발전하는 협회
 -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정책비판 기능
 - 협회 정책에 대한 견제 및 의견제출 기능
 - 각 지회 및 회원의 의견을 수렴제출하는 기능

□ 협회의견

- 감사과를 지난해 7월 중앙회에 설치하고 감사과장을 배치하여 협회 비상근 감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으며, 회원들의 개선건의 또는 진정 등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비상근 감사계서도 바쁜업무 중에 매주 1회 이상 협회에 나와서 협회업무 전반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감사계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메일 등으로 의견제출이나 개선 등 사안을 제안해주시면 됨
- 특히, 사안의 중대성 및 기밀성 등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게재보다는 서면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9. 중앙회장, 지회장 판공비

■ 제안내용

- 협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판공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전임회장(이희평)님께서 판공비의 과다한 지출을 자제 및 절약하셨는데, 현회장(최광주)님의 고견을 듣고 싶으며, 또한 각 지회장의 판공비 지급실태 및 현재 판공비는 얼마씩 지출되며 사용처는 알 수 없는지요?

□ 협회의견

- 협회의 판공비는 회계규정과 판공비지급요령에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음
- 판공비의 사용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용처를 밝히기 어렵고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규정의 양식에 의한 영수증 또는 지불증을 증빙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의원들께서 2009년도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보셨을 줄 알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안)에도 증감 없이 전년도와 같이 동일금액으로 편성하여 총회승인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제안자께서 현회장님의 고견과 각 지회장의 판공비 지급실태 및 지출사용처에 대하여 알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협회장님께서서는 협회와 회원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만 투명하게 사용하되, 그것을 가능한 한 절약하여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지회장 판공비는 지회특성에 따라 지급과 사용실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기 지회장회의 시 논의하여 지회와 회원을 위한 비용으로 똑같이 사용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심

10.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강화 의견

■ 제안내용

- 현 제도(2~4년) 실무경험이 검증없이 서류에 의하여 선임하게 되어 현장에서(근무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안전관리자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실정임
- 회원가입 시 협회에서 일정기간 실무연수 후 선임할 수 있는 안
- 협회에 실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검증 후 선임할 수 있는 안
- 동일현장 이중취업조건 개선안

□ 협회의견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선임자의 자격은 전기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술적 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일정기간 실무경력(1년 ~ 4년)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 이의 개선을 위해 제안자의 의견처럼 “회원 가입시 협회에서 일정기간 실무연수를 시키거나, 협회에서 실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검증 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협회 내에서 법정교육 시 실무실습 교육 강화 등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음

11. 자원봉사단체 설립 및 각 지회 소재지역의 자원봉사단체 가입

■ 제안내용

- 협회 내에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하여(각 지역별 50인이내) 각 지회 소재지 관할 (사)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에 단체가입(10인이상) 및 인근대도시 관할 2~3지역을 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의 전기 설비 등을 점검 및 보수 또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나아가 우리협회의 대국민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회의견

- 우리협회는 앞으로 협회발전은 물론 회원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 협회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공익단체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제안은 그 방향 중 하나로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연구·검토하고 회원님과 지회장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판단하여 차후 보고토록 하겠음

12. 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에 따른 협회의 참여

■ 제안내용

- 스마트그리드 협회 설립 : 2009. 5. 21
-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 : 2013년부터
- 스마트그리드 세계시장 규모 : 2030년 11조달러
- 우리협회도 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참여하여 시방서 제정, 설계기준 제정에 주도적 위상 확보
- 회원들에게 스마트그리드의 교육과 홍보시행

- 협회지에 지속적으로 정보제공
- 협회가 시행하는 모든 교육에 필수과목으로 편성

□ 협회의견

- 스마트그리드 협회 현황
 - 사업목적
 - 선진정보습득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의 글로벌 마케팅 확산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로 새로운 관점의 시장 접근
 - 운영사업
 - 전시, 국내외 참관단 운영
 - 세미나, 컨퍼런스 운영
 - 참여대상 : 스마트그리드 제품개발기업, 솔루션기업, 회원사, 일반인
- 제안하신 시방서 제정, 설계기준 제정 연구참여에 대해서는 지경부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공급을 통하여 참여할 계획이며, 교육 및 홍보부분은 교육훈련팀에서 자체 교육교재 개발 및 재편성을 통하여 대처할 계획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마트그리드 회원사로서 참여(가입비296만원, 연회비829만원)는 사업목적, 운영사업(전시부분) 등 협회 운영사업과 공통부분과 상반된 사업(기업비즈니스)이 있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 스마트그리드의 등장으로 전력산업의 중심축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있고, 전기의 일반상품화 및 소비자의 선택과 편익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력산업의 변화로 보고 우리협회도 변화의 중심에서 앞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임

13. 기타

- 협회는 앞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산업 환경에 부응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협회 내에 “협회발전방안 연구 TF Team”을 구성할 것이며, TF Team은 상무이사를 본부장으로, 각 부서장을 팀장으로 팀·과장을 팀원으로, 분야별 Working Group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회발전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협회 장기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그러므로 임원님, 지회장님, 대의원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협회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해주시고, 우리 협회는 협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회라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02 전력기술인 경력신고관련 유의사항 내용안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7. 11. 23)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양식의 직무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참여분야 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동 분류기준에 따라 협회에서 분류하고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경력신고 및 변경신고를 접수할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협회에 신고한 경력사항에 대하여 코드분류가 다르게 입력된 경우에는 경력변경 및 이의·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 직무분야, 담당분야 및 담당업무 분류

가. 직무분야 분류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0. 전기 11. 전기철도·신호 12.전기(기계) 13. 전기(토목) 20. 정보통신(전기) 30. 소방설비(전기) 40. 건설(전기) 41. 토목(전기) 50. 산업안전(전기) 60. 계량·측정(전기) <신 설> 90. 기타	10. 전기 20. 정보통신 30. 소방 40. 건설·토목·환경 50. 산업안전 60. 계량·측정 70. 전기용품 9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0번~13번으로 분류된 코드는 10번으로 자동수정 • 기존 20번~60번 코드는 개정 후 코드분야로 자동수정 • 전기용품 제조와 관련된 코드분야 신설

나. 담당분야 및 담당업무 분류

담당분야	담당업무	담당분야	담당업무
10. 설계	101. 설계	16. 점검·진단	161. 검사 162. 점검 163. 진단 164. 시험
11. 설계감리	111. 설계감리		171. 제조 172. 설계제작 173. 제작설치 174. 수리 175. 정비 176. 기기검사
12. 공사	121. 시공 122. 시공관리 123. 공사감독 124. 견적 125. 품질관리	17. 용품·기기제조	181. 검토 182. 계획 183. 조사 184. 측량 185. 산업안전 186.기술행정 187. 사업관리 188. 시운전
13. 공사감리	131. 상주감리 132. 부분상주감리 133. 비상주감리		19. 미 분류
14. 안전관리	141. 상주안전관리 142. 대행안전관리 143. 유지관리		
15. 교육·연구	151. 교수·교사 152. 교육행정 153. 연구		

※ 담당업무는 담당분야와 연계하여 분류코드 표에 따라 기록하고 해당 담당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코드를 기록하고 복수기재는 불가합니다.(기존에 담당업무를 복수로 신고한 회원님들께서는 PQ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변경을 통해 수정 또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분야 분류

※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주공정(주용도)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로 기재합니다.

구분	코드	내 용	내 용 설 명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 자 력	• 전기사업용 원자력발전소
	11	화 력	• 전기사업용 화력발전소
	12	수력·소수력	• 전기사업용 수력·소수력 발전소
	13	열 병 합	• 전기사업용 열병합 발전소
	14	풍 력	• 전기사업용 풍력발전소
	15	태 양 광	•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소
	16	송 전	• 전기사업용 송전설비: 가공, 지중, 물밀 등
	17	변 전	• 전기사업용 변전설비: 변전소, 개폐소 등
	18	배 전	• 전기사업용 배전설비: 가공, 지중, 물밀 등
19	기타발송변 배전시설	• 전기사업용 이외에 발·송·변·배전설비(구내배전설비 및 수전설비와 구내배전 설비상호간의 설비는 제외)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 공공업무시설: 국가·지자체청사, 외국공관, 공공기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동사무소 • 공공교통시설: 철도·지하철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공공복지시설: 시민·여성·장애인·청소년회관, 공공도서관 • 공공문화 및 집회시설 (예: 문화예술회관, 국립 및 시립박물관·미술관·극장, 예 술의 전당, 독립기념관 등) • 교정·군사시설: 교도소, 구치소, 감화원, 군사시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건축물대장 등에서 주용도가 공동주택으로 확 인된 경우에 한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2	업무시설	• 일반 업무시설: 사무실, 신문사, 금융업소, 오피스텔 • 방송·통신업무시설: 방송국, 전화국(중계소, 기지국 제외)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휴게소(고속국도 등), 편의점, 지하상가, 상점(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음식점, 제과점)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텔),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 병 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 의료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장례식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수도원, 제실, 사당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뒤탈터, 골프연습장 • 체육관: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구분	코드	내 용	내 용 설 명
건 축 물 시 설 (2)	27	체육시설	골프장 등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경륜경기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
	28	교육·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 초·중·고·전문대·대학·대학교 등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 • 교육원 : 연수원, 학원, 직업훈련원 등 이와 유사한 것 • 연구소 : 연구소, 시험소, 계측계량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육·연구시설
	29	기타건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공공문화 및 집회시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물, 비디오물소극장 - 집회장 : 음식점, 공회장,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민속촌, 한옥마을 • 노유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노인정) •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광탑 • 위락시설 : 단란주점, 주점영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및 무도학원 • 창고시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 포함), 하역장, 물류센터 •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납골당, 묘지부속건축물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 고속국도·국도 등 도로시설(휴게소 제외)
	31	교량시설	•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 터널시설
	33	댐 시설	• 조정지, 저수지 등 댐 시설
	34	항만시설	• 부두, 등대, 선박하역장, 방조제 등 항만시설(청사건물 및 여객터미널 제외)
	35	공항시설	• 공항시설(청사건물 제외)
	36	전기철도시설	• 여객, 화물운송을 위한 동력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배전선로, 변전설비 및 전차선로 등(철도역사 제외)
	37	철도신호시설	• 열차,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 운행정보장치(신호, 열차방향 등)
39	기타공공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공공시설 (예 : 방송통신시설 : 중계소, 송신소, 기지국 등)	
에 너 지 ·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 지역난방, 도시가스공급기지등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분뇨·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42	오·폐수처리시설	• 오·폐수처리장 등 처리시설
	43	상·하수도 ·정수시설	• 취수장, 양수장, 정수장, 기압장, 양탕장, 수원지, 배수지, 빗물펌프장 등 상·하수도 및 정수관련시설
	44	공원시설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놀이공원, 야외공원, 유원지, 수목원 등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 시설, 가스충전·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9	기타에너지·환경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 에너지·환경관련 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생산 및 가공 공장시설 • 플랜트 설비, 아파트형 공장 등
	99	기 타	• 참여분야 분류표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없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03 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제73호 안내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1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 고시합니다.

■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접지전극 동시매설 공법 (기술)
- 지정번호 : 제73호
-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광진 · 전우실업(주)
 - 대표자 : 이수규 · 최기정
 - 법인등록번호 : 1748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171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① 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굴착 및 봉형 접지전극 동시매설의 기계화 공법
- ② 접지저항 저감재의 압력주입 기계화 공법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한 보호
 - * 신기술 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0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휴 기업(법인)카드 발행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우리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기업카드(우리비즈·TaxRefund)를 12월부터 발행 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을 바라며, 자세한 안내 및 신청서는 업체별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 기업(법인)카드 종류

공용카드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드	기업계좌 결제
지정카드	사용자를 지정하여 발급하는 카드	기업계좌 결제
	사용자, 결제계좌를 지정하여 발급하는 카드	개인계좌(사용자) 결제 (법인 청구 원칙)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자, 결제계좌를 지정하고 법인이 연대보증을 하는 카드	개인계좌(사용자) 결제 (先 개인(임직원) 책임 원칙)

■ 제공서비스 내역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 명 : 「우리 V 비즈 TaxRefund카드」 발급구분 : 공용, 지정(개인형 법인 포함) 발행등급 : 골드 기본 연회비 : 1만원(연간 20백만원 국내가맹점 이용시 다음 연회비 면제) 발행 카드 : VISA
공용 서비스	할인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주유소 주유할인 서비스 (LPG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금액 : 리터당 50원 - 할인횟수 : 1일 2회, 1회 주유금액 10만원한도, 월 4회 청구할인 - 할인대상 회원 : 해당 카드별 최근3개월 국내가맹점 이용액(주유 제외) 30만원 이상 회원
	포인트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가맹점 이용액의 0.2% 기업 포인트 적립 (Cash-Back 가능)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0.1% 발전 기금 제공(500기업 이상 발급시) - 해당 결제일 이용대금 연체시 또는 거래정지시 전체 포인트 미적립
	Tour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ur Members Club 기본 서비스 제공
	카드 우대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업종 무이자 2~3개월 할부서비스 (할부 이용 등록 회원 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종 : 전국 주요 백화점(4001,4002), 할인점(4004), 일반가구(3001), 가전제품(3101), 항공사(1101), 여행사(1110), 국내면세점(4040), 골프장(2101), 렌터카(1130), 스포츠/레저용품점(2001,2002)
	은행거래 우대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전수수료 50% 우대서비스 (USD, JPY, EUR) / 기타통화 30% 우대 ※ 단, 인천국제공항지점은 제외
	부가세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용내역을 부가세 대상·비대상으로 자동분류하여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니이스데이터(주) 회원가입 필수이며, 수입세무사가 회원가입을 할 경우 카드사용내역을 수입세무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총무경영팀 문의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배너광고 “제휴카드안내”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